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2호 2022. 8. 3.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1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1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873호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22-883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2-884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8
- 정선군 공고 제2022-893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0
- 정선군 공고 제2022-899호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45
- 정선군 공고 제2022-905호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49

○ 정선군 공고 제2022-912호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공람·공고.....54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10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일

정 선 군 수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6길 52	2022.08.02.	건물 멸실	건축물대장 말소(2022.04.1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033-560-21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873호

##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정 선 군 수

### 1. 개정 이유

- 기존 조례에 ‘교복’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으로 정의하였으나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이 아닌 학교생활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규정 상의 교복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인권침해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 없이 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임.
-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재정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교복’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당초 :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변경 :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 3. 의견 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여성청소년과)
- 전 화: 033-560-2185
- 팩 스: 033-560-2141
- 이 메 일: luisson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2호” 를 “제2조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 )” 를 “정선군수(이하 “군수” )”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883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 「송계1지구, 송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정 선 군 수

- 1. 사 업 명 : 송계1지구, 송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시 행 자 : 정선군수
-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 송계1지구 : 625필지 / 179,900.8㎡
  - 송계2지구 : 353필지 / 422,614.8㎡
- 4. 공람기간 : 2022. 7. 26. ~ 2022. 8. 9.(15일간)
- 5. 공람장소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지적재조사팀)
- 6. 공람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정선군 공고 제2022-884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5조제1항)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6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560-2288
- 팩 스 : 033-560-2587
- 이메일 : bulgery@korea.kr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 을 “제8조제6항”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이하 ” 영 “ 이라 한다)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제8조제6항 ----- ----- ----- -----.</p>
<p>④ (생략)</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 2024년 12월 31일----- ----- ----- ----- ----- -----</p>

현 행	개 정 안
<p>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2. (생략)</p> <p>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p> <p>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p>	<p>-----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p> <p>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p>

현 행	개 정 안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 ----- ----- ----- ----- ----- ----- ----- <u>2024년 12월 31일</u>-----.</p>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본조신설 2014. 1. 1.]

□ 식품산업진흥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9조의4 삭제 <2020. 2. 18.>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선군 공고 제2022-893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불일치 등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04.20.) 반영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및 수정 등
- 법령 개정에 다른 용어 현행화 등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2),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 를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으로, “이내” 를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를 “긴급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총괄업무담당” 을 “총괄업무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을 “영 제7조제3항” 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을 “무상사용허가대상”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을 “(사용허가의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각각 “사용허가” 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을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을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을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부” 를 “사용허가부”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

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4항제5호 중 “제5호”를 “제5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단서 중 “감정평가인”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8에”를 “제8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④<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⑤ (생략)</p> <p>⑥<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⑧<u>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이 된다.</u></p> <p>⑨<u>심의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긴급하거나</u> ----- -----.</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총괄업</u> <u>무팀장</u>-----.</p> <p><u>&lt;삭 제&gt;</u></p>
제4조의2(심의회 기능) ① (생략)	제4조의2(심의회 기능) ① (현행)

현 행	개 정 안
<p>략)</p> <p>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3. (생략)</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삭제</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과 같음)</p> <p>②----- ----- -----.</p> <p>1. 영 제7조제3항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u>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p> <p>② (생략)</p>	<p><u>곱미터</u>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 <u>곱미터</u></p>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u>무상사용</u> <u>허가대상</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 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생략)</p>	<p>제18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용허</u> <u>가</u>-----.</p> <p>1.·2. (현행과 같음)</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7. (생략)</p>	<p>제19조(<u>사용허가</u>) ----- <u>사용허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6. <u>사용허가</u>----- -----</p> <p>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u>사용·수익 허가</u>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u>사용허가</u> 할 수 있는 경우) ----- ----- ----- ----- ----- <u>사용허가</u>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20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0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 ----- <u>사용</u> ----- <u>허가부</u>----- -----. -----.</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허가</u>----- ----- ----- ----- ----- ----- ----- ----- ----- ----- -----</p>
<p>④ ~ ⑥ (생 략)</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u>----- ----- ----- ----- -----</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이 <u>국가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p>	<p>1. ----- ----- ----- <u>산업단지</u>----- ----- -----</p>

현 행	개 정 안
<p>2. ~ 6. (생 략)</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p> <p>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 략)</p> <p>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p> <p>6. (생 략)</p> <p><u>&lt;신 설&gt;</u></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제5호에 따른 수도권</u> ----- -----</p> <p>6. (현행과 같음)</p> <p>7.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u>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⑤·⑥ (생 략)</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p> <p>②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u>감정평가인등</u>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p>----- . ----- ----- ----- ----- <u>감정평가법인</u>-----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의</u>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 <u>감정평가법인등</u>----- ----- ----- ----- -----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13조 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① -----<u>제13조의2</u> 제3항 및 영 제19조----- ----- -----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④ (생 략)</p> <p>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사용허가하는</u> ----- -----</p>
<p>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⑥ ----- ----- <u>사용허가하는</u> ----- -----</p>
<p>⑦·⑧ (생 략)</p> <p>제32조(<u>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u>)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32조(<u>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u>) ①----- ----- ----- <u>사용허가</u>----- -----</p>
<p>1. ~ 4. (생 략)</p> <p>② (생 략)</p> <p>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로</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허가</u>----- ----- ----- -----</p>

현 행	개 정 안
<p>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 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 -----.</p>
<p>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정선군 재 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④----- -----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 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 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u>사용허 가</u>----- ----- ----- ----- ----- ----- -----.</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 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 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 다)로 한다.</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 ----- ----- ----- ----- -----.</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제8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p>	<p>1. ----- ----- <u>제8조에</u>----- ----- ----- -----</p>

현 행	개 정 안
<p>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 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 4. (생 략)</p>	<p>----- ----- 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 1. 사업목적 및 용도
- 2. 사업기간
- 3. 소요예산
-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몰납
-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

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  
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  
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  
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0. 8.  
5., 2021. 6. 22.>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  
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  
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  
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6. 7. 28., 2021. 6. 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1. 6. 22.>

[전문개정 2009. 7.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1. 8.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 7. 27., 2011. 3. 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회계과장 전훈표

정선군 공고 제2022-899호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2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3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07. 29. ~ 8. 1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40),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이란 정선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상권법 )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 2. 사업계획서
-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905호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의용 소방대원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 나.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안 제4조)
- 다. 보조금 지원의 지도·감독과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라.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포상 규정을 마련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h81@korea.kr

2) 우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팩스 : 033-560-2174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033-56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성명 (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공고 제2022-912호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1. 강원도 고시 제2022-15호(2022. 1. 07) 및 정선군 고시 제2022-15호(2022. 1. 11)와 관련하여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14차) 고시에 의거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2. 사업개요
  - 가. 대상명칭 :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 나. 사업명 :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 다.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 애산리 일원
  - 라. 면적(사업 규모)
    - 교량 : L=475m, B=14.8m
    - 접속도로 : L=207.36m, B=14.0m
    - 상부광장 : L=90m, B=33.0m, A=2,418m<sup>2</sup>
- 3.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 나.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2. 8. 03. ~ 8. 19.)
-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정선군청 건설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건설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정선군 홈페이지 <https://www.jeongseon.go.kr> 공고/고시 참조)